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의결 절차

1. 운영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021년 7월 1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2년 4월 8일까지 약 9개월간 설치·운영되었다.

■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9.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재·보궐선거시에도 선심위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2. 23. ~ 2013. 5. 24.	2013. 4. 24.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8. 31. ~ 2013. 11. 29.	2013. 10.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2. 3. ~ 2014. 7. 4.	2014. 6. 4.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5. 31. ~ 2014. 8. 29.	2014. 7. 30.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8. 30. ~ 2014. 11. 28.	2014. 10. 29.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2. 28. ~ 2015. 5. 29.	2015. 4. 29.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8. 29. ~ 2015. 11. 27.	2015. 10. 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12. 14. ~ 2016. 5. 13.	2016. 4. 13.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6. 2. 13. ~ 2016. 5. 13.	2016. 4. 13.	2015. 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선이 없는 해에는 재·보궐선거 1회로 축소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2. 11. ~ 2017. 5. 12.	2017. 4. 12.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3. 20. ~ 2017. 6. 8.	2017. 5. 9.	2017. 3. 10. 탄핵결정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2. 12. ~ 2018. 7. 13.	2018. 6. 13.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2018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4. 13. ~ 2018. 7. 13.	2018. 6. 13.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9. 2. 2. ~ 2019. 5. 3.	2019. 4.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9. 12. 16. ~ 2020. 5. 15.	2020. 4. 15.	
2020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0. 2. 15. ~ 2020. 5. 15.	2020. 4. 15.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1. 2. 6. ~ 2021. 5. 7.	2021. 4. 7.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1. 7. 11. ~ 2022. 4. 8.	2022. 3. 9.	

2. 구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언론인단체)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분	성명	이력	추천단체	비고
위원장	홍성무	(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조원봉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윤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저문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국민의힘	- 유정화 위원 사퇴(2021. 11. 26.)에 따른 위촉(2021. 12. 6.)
	김경환	(현)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김대광	(현) 김대광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남영진	(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한국기자협회	
	엄기홍	(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원영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 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앞줄) 왼쪽부터 남영진 심의위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홍성무 심의위원장, 김윤영 심의위원
(뒷줄) 왼쪽부터 엄기홍, 정원영, 김경환 심의위원, 조원봉 부위원장, 김대광 심의위원,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3. 기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 의한 후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판 단하는 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정당(중양당) 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 한다.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제재조치 관련규정

제재조치	관련법률	관련규칙
정정보도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반론보도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	
경고결정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주의사실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1. 자체심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 담당부서인 심의2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 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자체 모니터링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보도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참고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한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기사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한다. 심의위원회는 결정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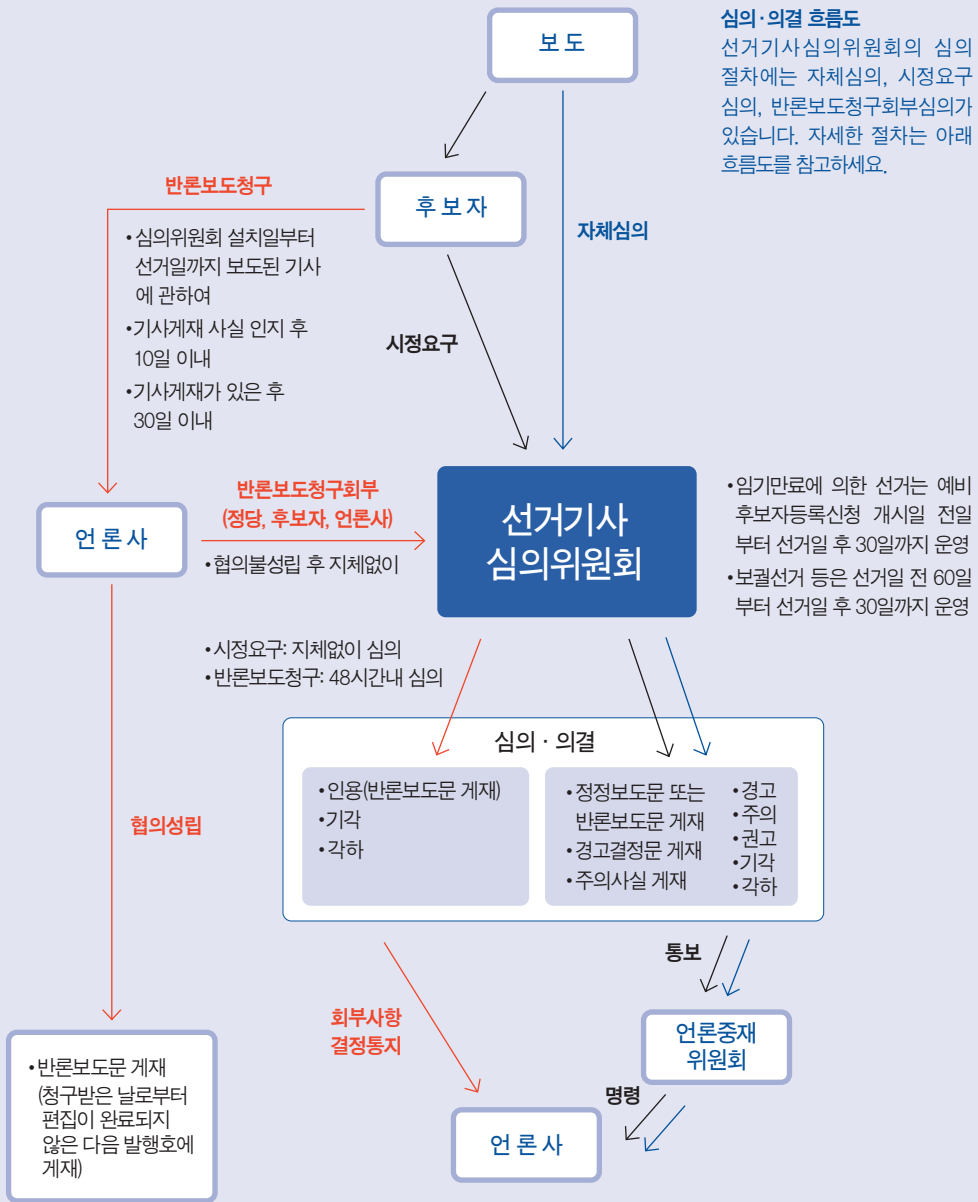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6항,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동안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해당 기사, 시정요구인의 신청취지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이를 지체없이 심의한다.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적절한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한편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를 결정한다. 결정 이후의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4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지체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 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 심의절차



불이행시

※ 처벌조항: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결정사항 불이행시 공직선거법(제256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재심청구

•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재심 청구는 1회로 제한됨

